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필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2
----------	-------

발의년월일 : 2021. 4 . .

발 의 자 : 이필레, 김성희, 김영미,
이홍민, 장덕준

1. 제안이유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21. 4. 9. ~ 4.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에 해당

- 연평균 1억원 미만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3. 미첨부 사유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비 및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기시행중인 미혼모부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에 한부모가족 포함하여 지원가능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김성국
연락처	02-3153-8933